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가합53118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9. 10. 22.
판결 선고 2019. 12.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2,930,602원 및 그 중 99,778,943원에 대하여는 2019. 5.2.부터,
101,314,739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각 2019. 6. 7.까지는 연 10%,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1,615,863원 및 그중
99,778,943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6.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11. 27. 체결된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2018. 12. 21. 접수 D로 마친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1)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02,930,602원 및 그 중 99,778,943원에대하여는 2019. 5. 2.부터, 101,314,739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101,615,863원 및 그 중 99,778,943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1	2016. 12. 23.	102,600,000	2017. 12. 27.(2018. 12. 28.)
2	2018. 8. 10.	100,000,000	2022. 8. 10.

-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그 중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 3) 피고 A은 2016. 12. 27.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원금 114,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8. 8. 10.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F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 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소정의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4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이 2018. 12. 28. E은행에 대하여, 2019. 1. 15. F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원고는 피고 A을 위하여 2019. 5. 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9,778,943원, 2019. 5. 3.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1,314,739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의 특허권 처분행위

1) 피고 A과 주식회사 G은 H일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I 에 관한 특허권이고,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2) 피고 A, 주식회사 G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2018.11. 27. 피고 C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J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권중 피고 A이 보유하고 권리를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 공동소유 및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3) 피고 A은 2018. 12.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2018. 12. 21. 접수 D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제2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A에 대하여 대위변제채무 및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02,930,602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99,778,943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101,314,739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834,500원+ 법적절차비용 1,002,42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99,778,94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5. 2.부터,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101,314,73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5. 3.부터 각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19. 6. 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101,615,863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99,778,943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834,500원 +법적절차비용 1,002,4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9,778,94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2019. 5. 2.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19. 6. 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변론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정이율을 초과 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지분 전부가 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 체결일인 2018. 11. 27. 당시에 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대출이

시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은 그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18. 12. 28. E은행에 대하여, 2019. 1. 15. F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 4개월정도 경과한 2019. 5. 2. 및 2019. 5. 3.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C과 이 사건 특허권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이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 A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반면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A이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45,630,000원의 채무, K은행에 대한 32,700,000원의 채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416,855,000원의 채무, L에 대한 8,05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가) 피고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특허권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M 기술에 관한 N협회의 신기술 인증 추진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었고,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A과 피고 C이 2018. 8. 24.경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J 사업을 위한 협력계약체결을 협의하여 온 사실, 피고 C이 2019. 1. 2. 이 사건 특허권 기술에 관하여 N협회에 신기술 인증 심사를 신청한 사실, 피고 C이 2018. 12.경 O특허법률사무소와 M 시스템을 신기술로 인증받기 위한 기술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0. 위 특허법률사무소에 수수료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2호증의 7, 을나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 제6조는 피고 C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아 이용하는 대가인 로열티를 오로지 주식회사 G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 점, 달리 피고 A이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양도대금 등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이 피고 A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 유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8. 11. 27. 체결된 이 사건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은 특허청 2018. 12. 21. 접수 D로 마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하상제, 판사 김유경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8. 12. 21.자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가 제2호증의 7,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사이에 2018. 11. 27.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특허 공동소유 및 사업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지분양도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지분양도계약 날짜의 기재는 옳기로 보인다.